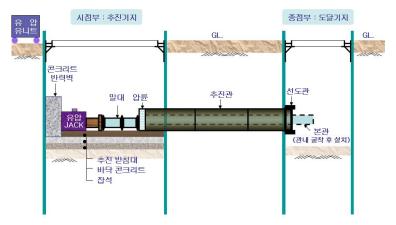
관로매설공사(유압식 추진공법)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.) 제2 편(안전기준) 제4장(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) 제2절(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) 규정에 따라 관로매설공사(유압식 추진공법)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락, 낙하, 붕괴, 감전, 협착,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보건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도로, 철도, 제방, 하천 등을 횡단하여 관로를 매설해야 할 경우 추진구간의 시점과 종점부에 추진·도달기지를 설치하고 분할된 추진관을 유압 잭(Jack)과 같은 추진 장치에 의하여 원지반에 압입하고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관내 토사를 굴착한 후 본관을 설치하는 유압식 추진공법에 적용한다.



<그림 1> 유압식 추진공법 개요도

3. 용어의 정의

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